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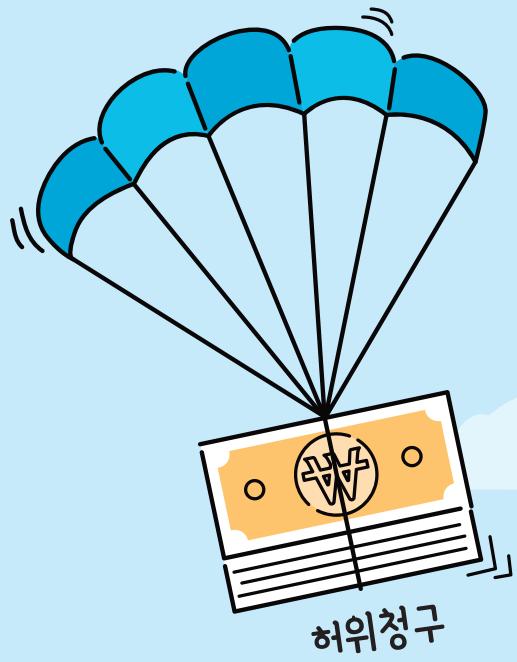
어린이집 보조금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

부정이익의 환수 |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 명단공표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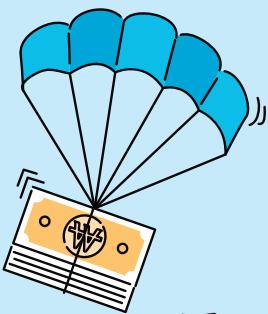
허위청구



목적의 사용



오지급



과다청구



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부정이익의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신고자 보상·포상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01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은 대표적인 공공재정지급금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이란?

어린이집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말하며 대표적인 **공공재정지급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보육교직원 인건비(가정, 민간, 협동어린이집 제외), 담임교사 지원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보조교사(보조, 연장전담)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등

지방보조금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취사부 인건비, 반별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02

어떠한 경우가 부정청구에 해당하나요?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의 유형 [법 제2조제6호]

(부정수급)



허위청구 [기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나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다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라목]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03 어린이집 보조금 주요 부정청구 사례는?

사례1

A어린이집 원장은 근무하지 않는 교사 및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사례2

B어린이집 원장은 시간제 교사를 상시근로자로, 운전 담당자를 보육교사로 각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어? 진짜
교사가 아니네!

-
-
-



사례3

C어린이집 원장은 시간연장·휴일보육 아동을 허위 등록하고 시간연장·휴일보육 인건비를 허위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시간연장
휴일보육
허위등록



누구든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04 어떻게 신고하나요?

소중한 나랏돈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FAX

044-200-7972

05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비밀보장

철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신분보장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신고자와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등의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면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 등과 관련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등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06

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 지급 신청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 ① 국민권익위원회
- ②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 ③ 그 감독기관
- ④ 감사원 또는
- ⑤ 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신청방법
안내**

신고자

보상금
지급신청

신청요건

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원

신고자 보상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044-200-7742~7748)

06

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포상금 지급 추천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지급 대상자 추천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가능

추천요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부정청구등 신고
포상금 최대
2억 원

신고자 보상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044-200-7742~7748)





어린이집 보조금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공재정환수제도과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044) 200-7642-7650
<http://www.acrc.go.kr>